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025. 9.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100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5년 8월 14일(목)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월)

2. 제출사유

「마포365 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개장에 따른 체육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주변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1조 제3항)
- 나. 「마포365 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체육시설 추가 (별표1)
- 다. 「마포365 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사용료 등 범위 규정(별표2~별표4)
- 라. 만 나이 정비(안 [별표2] 비고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7. 17.~8. 6.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고용협력과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동의
- 5)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보고

가. 개정목적 및 추진경위

- 본 조례 개정안은 「마포365 구민센터」 및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를 구립 체육시설로 편입하고,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8월 18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해당 개정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보류, 제276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수정안 가결 → 본회의 부결 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새로운 조례 개정안이 재제출 되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경과

- 2025.4.25.: 제275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상정 → 제2차 행건위 ‘보류’ 결정
- 2025.6.26.: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보류건 재상정 → 제7차 행건위 ‘수정안 가결’
- 2025.6.27.: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수정안 부결’ (이의신청 후 투표)
- 2025.8.27.: 제278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새로운 내용) 재제출

○ 한편, 「마포365 구민센터(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는 당인리발전소¹⁾ 지하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임.

-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환경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안에도 서강동·합정동 주민에게 건강관리센터(남·여 사우나) 이용료를 마포구민 및 타 지역민보다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 마포 365 구민센터 이용료안 (제275회 임시회 제출된 당초안) 〉

명칭	구분	대상		이용료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서강동 합정동 구민	성인·청소년	5,000 ~ 10,000
			어린이	4,000 ~ 8,000
		마포구민	성인·청소년	6,000 ~ 12,000
			어린이	5,000 ~ 10,000
		타지역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 하지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감면 수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상암동 주민편익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

- 「마포365 구민센터」는 신축 시설이므로,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요금 보다 1,000원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서강·합정동 주민에게 상암동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2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당인동)에 있는 화력 발전소임.(법정동: 당인동, 행정동: 서강동). 정식 명칭은 의외로 '당인리화력발전소'가 아닌 '서울화력발전소'로 1969년에 명칭이 바뀌었음.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 발전소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화 공사에 착수하였음.

〈 상암동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이용료 〉

(시행일: 2024. 11. 1., 단위:원)

명칭	구분	대상	이용료			비고
마포주민 편익시설	사우나 (대중목욕탕)	비상암동 거주주민	타지역	대인	7,000	※ 소 인 6세이하 경로우대 65세이상
			마포구	대인	5,000	
				소인	4,000	
		상암동 거주주민	대인		4,000	
			소인		3,000	
			경로우대		3,000	

- 이후, 2025년 6월 26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다음 날인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로 최종 투표가 진행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되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주요 논의 사항

- 행정건설위원회 개정안 재심사 시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① 서강·합정동 주민에게 사우나 요금을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이용하는 상암동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요청,
- ② 사우나 요금 감면 대상 지역에 서강·합정동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신수동을 포함,
- ③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마포구 전체가 포함 가능하므로, 마포구민 전체에 동일한 감면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이 세 번째 수정안이 최종 가결되었음.

- 이에 따라, 마포구청장은 2025년 8월 27일 제278회 임시회에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이번 재제출안에서 당초안과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당초안에서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사용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으나,
- 재제출안에서는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과 사용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되었음.

제275회 임시회 제출(안)/ 당초안	제278회 임시회 제출(안)/ 재상정안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사용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u> ④ ~ ⑧ (기준 ③ ~ ⑦ 항과 같음) [별표 2] <개정 2023.12.27> <u>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u>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사용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u> [별표 2] <u>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u>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 리센터	서강동 합정동 구민	성인· 청소년 어린이 4,000 ~ 8,000	
		성인· 청소년	6,000 ~ 12,000	
		마포 구민	어린이 5,000 ~ 10,000	
		성인· 청소년	7,000 ~ 12,000	
		타지역	어린이 6,000 ~ 12,000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공덕 실뿌리복 지센터 피트니스 센터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 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 실뿌리복 지센터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 즉, 감면 대상과 범위는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지방자치법」 제156조2)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표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함.
- 법제처 유권해석(2016.9.22. 의견제시 16-0260)에서도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으며, 공익상 필요할 경우 감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2)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11조 제3항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면 대상과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방식임.
- 참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관련 타 자치구 규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규정한 구는 21개,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구는 1개(송파), 조례와 시행규칙을 병행 규정한 구는 3개(강서, 동작, 마포)임.(붙임 1 참고)
- 서울시 조례의 경우 유사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음.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 이 밖에, (별표 1)에는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의 구립 체육시설 편입이 추가되었으며, (별표 2~4)에는 인근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기준 범위가 규정되었음.

다.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구립시설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료 감면 근거를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시행규칙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감면 정책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정당성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특히, 감면 기준을 ‘환경 영향 규모’와 같은 정성적 판단 요소에 의존해 설정할 경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향후 이해충돌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시 환경 지표·민원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감면 기준을 마련³⁾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바, 감면과 운영 사이에 균형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함.(붙임 3 참고)

3) 서울시의 경우도 유사 사례로, 잠실야구장 및 잠실 주·보조경기장 인근의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통해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지역 보상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 2022.8. ~ 2023.3.8.).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운동경기부 및 학과수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체육단체(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 및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관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중략)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4~10항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21.11.4.>
2. 삭 제 <2021.11.4.>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중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인, 71세 이상은 50퍼센트 할인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5.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제3조의2에서 정한 해당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6. 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막내가 18세를 넘지 아니한 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계절별·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월 2개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2. 월 3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5퍼센트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와 같다.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이내

〈 개요 〉

- 1) 위 치: 마포구 당인동 1-30외 2필지
- 2) 시설규모: 연면적 7,693.65㎡(지하1층, 지상5층)
- 3) 층별현황

층별		면적(㎡)	시설내역
옥상		-	전망대·천문대
지상	5층	188.99	전망테라스(한강 및 광장), 편의점
	4층	1575.75	다목적 체육관
	3층	1572.10	다목적실, GX룸, 사무실
	2층	1588.29	피트니스 사우나
	1층	891.20	만남의 광장, 카페·판매시설, 사무실, 관리사무실, 주차장(45대)
지하 1층		1877.32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지하주차장(27대)

4) 위치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운영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운영수익 적자 예상)
- 비용추계기간 : 2025. 1. ~ 2029.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6개월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177,910	186,806	196,146	205,953	216,251	983,066
		프로그램 수강료	588,588	1,196,781	1,232,683	1,269,643	1,307,713	5,595,408
		시설이용료	127,158	216,177	222,662	229,342	236,222	1,031,561
		대관료	57,760	114,048	117,469	120,994	124,623	534,894
		사물함사용료	11,400	21,636	22,285	22,953	23,642	101,916
	소계(a)		962,816	1,735,448	1,791,245	1,848,885	1,908,451	8,246,845
세출	인력운영비	인건비	820,011	1,290,912	1,337,145	1,396,015	1,467,730	6,311,813
		일반운영비	21,610	24,830	24,830	24,830	24,830	120,930
		직무수행경비	9,555	25,440	25,440	25,440	25,440	111,315
		여비	2,400	8,640	8,640	8,640	8,640	36,960
		포상금	0	58,286	62,366	66,732	71,403	258,787
	프로그램 운영지원	연금부담금	183,834	257,392	274,140	292,024	311,123	1,318,513
		프로그램 수강료	384,032	780,794	795,091	809,924	824,907	3,594,748
	패적인 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50,360	43,040	43,040	43,040	43,040	222,520
		일반운영비	167,375	221,564	201,564	201,564	201,564	993,631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335,172	17,000	17,000	17,000	17,000	403,172
		일반운영비	705,158	827,050	888,784	956,661	1,031,263	4,408,916
		업무추진비	5,820	9,720	9,720	9,720	9,720	44,700
	소계(b)		2,685,327	3,564,668	3,687,760	3,851,590	4,036,660	17,826,005
총 비용(a-b)		△1,722,511	△1,829,220	△1,896,515	△2,002,705	△2,128,209	△9,579,160	

4.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 편성(구비100%)

5. 덧붙이는 의견

- 세입_프로그램수강료의 경우 할인 등록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지 않음, 할인 등록율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변동(수입금 감소) 됨.
- 인건비 상승률 직종에 따라 3~7%책정(기본급 상승률 3%에 호봉상승률 4% 적용)
- 공공요금 상승률 연10% 책정(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 프로그램 강사료 연1% 상승 책정(프로그램 신설 등)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 남유민
연 락 처	02-3153-9856